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였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전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년 5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

여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관하여 관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

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75 판결).

결론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 절차에 법률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